



제439회국회(정기회)
제1차 국토교통위원회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 시 교통약자 의견 청취 의무화〉
■ 정희용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8440호)

2026. 9.

국 토 교 통 위 원 회

전 문 위 원 오 세 일

목 차

□ 정회용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8440호)	1
I. 제안경위	1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. 검토의견	3
1.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 시 교통약자 의견 청취 의무화(안 제12조 제2항)	3

□ 정회용의원 대표발의(2218440)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정회용의원 등 10인
2. 제 안 일 : 2026. 4. 20.
3. 회 부 일 : 2026. 4. 21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면허·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, 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상 의견 청취 규정이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어 교통약자의 의견이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심사 시에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2항).

Ⅲ. 검토의견

1.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 시 교통약자 의견 청취 의무화 (안 제12조제2항)

가. 검토의견

개정안은 교통행정기관¹⁾이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·허가·인가 등을 할 때 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이 교통약자²⁾ 이동편의시설³⁾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현행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2항).

현행	개정안
제12조(기준적합성 심사) 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·허가·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.)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	제12조(기준적합성 심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

- 1) “교통행정기관”이란 교통수단의 운행·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·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말한다.(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제6호)
- 2) “교통약자”란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.(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제1호)
- 3) “이동편의시설”이란 휠체어 탑승설비, 장애인용 승강기,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(歩道),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,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.(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제7호)

현행	개정안
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③·④ (생략)	----- ----- <u>들어야 한다.</u> ③·④ (현행과 같음)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기준적합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통사업자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면허·허가·인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현행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⁴⁾, 버스, 도시철도, 철도, 항공기, 선박 등 교통수단⁵⁾과 정류장, 역사, 공항 등 여객시설⁶⁾에는 법령에서

4)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

제9조(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)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(이하 “대상시설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.

1. 교통수단
2. 여객시설

제10조(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)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·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5)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교통수단”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.

가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(이하 “버스”라 한다)

나.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

다.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

라. 「궤도운송법」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

마.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

정하는 기준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, 장애인용 승강기,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.

현행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·허가·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(이하 “기준적합성 심사”)하도록 규정하고, 이 경우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리고 현행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호⁷⁾에서는, 교통행정기관이 기

바. 「해운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
사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

6)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“여객시설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.

가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

나.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

다.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

라. 「케도운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케도시설 중 케도차량을 제외한 시설

마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

바.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

사. 「항만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

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

7)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」

제12조의2(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방법) 교통행정기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.

1. 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할 것

2. 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또는 도서(圖書)를 제공할 것
가.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에 관한 사항

나. 이동편의시설의 종류, 구조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

3. 의견청취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할 것

준적합성 심사 시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개정안은 기준적합성 심사 시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견청취 절차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수렴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.

다만, 의견청취 절차를 의무화하더라도 요식적 절차에 그친다면 교통약자의 참여를 통한 이동편의 증진이라는 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현행법 제25조⁸⁾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 이행 실태를

8)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

제25조(실태조사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.

1.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

2.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

2의2. 특별교통수단의 환승·연계 체계 구축 현황

3.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

4. 보행환경 실태

5. 교통수단, 여객시설,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

5의2.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

6.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,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,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점검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참고로,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, 전국의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법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비율이 시 지역은 4.7%, 도 지역은 7.5%이고, 법정 기준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비율은 시 지역은 10.4%, 도 지역은 16.8%로 나타나고 있음.

<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>

(단위 : %)

대상 지역	대상연도	설치		미설치
		기준적합	기준미적합	
8개 특별·광역시	2019	79.4	4.6	16.0
	2021	81.5	5.2	13.3
	2023	84.9	4.7	10.4
9개 도	2020	72.1	8.6	19.2
	2021	73.5	8.8	17.6
	2022	75.1	8.3	16.6
	2024	75.8	7.5	16.8

※ 2021년에는 5년 단위의 전국 조사를 실시

자료 : 2019~2024 각 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

나. 국토교통부 의견

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임을 고려할 때, 수요자인 교통약자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음.

문 의 처
02)6788-5584